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공고 제2026-079호

##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2026년 7월 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안산시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 방류

나. 품종 및 구입내역

품명	규격	기초금액	예산금액(원)	예정 물량	방류예정수역
조피볼락	전장 6.0cm 이상 (±10%)	440원/마리 (부가세미포함)	199,378,000 (부가세미포함)	453,132마리 이상	안산시 관내해역

※ 예정물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규격 및 납품조건” 참조  
다. 납품기한 : 전염병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라. 사업내용 : 낙찰자는 감독직원(공단)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방류 시 감독직원(공단)의 감독 하에 종묘를 검수 후 납품자가 방류해역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계약(마리당)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림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사전검수(세부규격 및 납품조건에 따라 실시)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전염병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자여야 합니다.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방류 후 생존율 향상 및 효과 제고 등을 위한 중요생산 지역과 자가생산의 인정범위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붙임 매입방류 납품조건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026. 7. 14.(화) 10:00**까지 아래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종자생산허가증

○ **팩스번호 : 0504-289-7019**

○ 제출 후 필히 담당자(임도경/063-440-2612)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고, 분실·훼손·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7.8.(수)~2026.7.14.(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14.(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천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12조 및 제1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1)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적용
- 2) 물품구매 공고로 가.기술능력 점수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3) 낙찰하한율 : 84.245%
-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분임재무관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작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작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작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